

2025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지급 기준

1. 전문인력

가. 인건비

(단위: 월, 원)

구분	호봉	근무기간	지급금액
인건비	1	1년 미만	2,510,350
	2	1년 이상 2년 미만	2,585,550
	3	2년 이상 3년 미만	2,635,660
	4	3년 이상 4년 미만	2,688,240
	5	4년 이상 5년 미만	2,741,360
	6	5년 이상 6년 미만	2,872,720
	7	6년 이상 7년 미만	2,932,340
	8	7년 이상 8년 미만	2,992,810
	9	8년 이상 9년 미만	3,051,450
	10	9년 이상 10년 미만	3,110,060
	11	10년 이상 11년 미만	3,168,960
	12	11년 이상 12년 미만	3,226,190
	13	12년 이상 13년 미만	3,283,420
	14	13년 이상 14년 미만	3,340,530
	15	14년 이상 15년 미만	3,397,620
	16	15년 이상 16년 미만	3,455,940
	17	16년 이상 17년 미만	3,513,460
	18	17년 이상 18년 미만	3,576,160
	19	18년 이상 19년 미만	3,638,870
	20	19년 이상 20년 미만	3,701,560
	21	20년 이상 21년 미만	3,764,550
	22	21년 이상 22년 미만	3,826,220
	23	22년 이상	3,888,880

* 전년대비 3% 인상을 반영

나. 명절휴가비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
명절 휴가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수행하며, 개발원에 보고되어 인건비를 지원받는 훈련지원인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총 1,000,000원 (설과 추석 각 500,000원씩)	‘설’ 과 ‘추석’ 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 과 ‘추석’ 전 15일 이내 기관장이 정한 날)